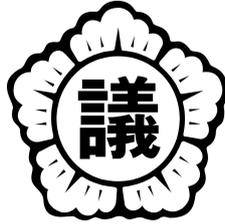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안)



성 북 구 의 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안)

(김춘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4월 16일

발 의 자 : 권영애, 김률희, 김일영, 김춘례,  
김태수, 목소영, 박학동, 송대식, 송영옥, 안향자,  
오중균, 유경상, 윤만환, 이광남, 이미영, 이인순,  
임태근, 정형진, 조민국, 진선아 의원 (20명)

## 1. 제안이유

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, 기능, 임기, 운영 등(안 제5조~안 제8조)
- 마. 대안교육기관 지원(안 제10조)
- 바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(안 제13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5. 4. . ~ . .)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,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.
3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제2호의 “대안교육”을 행하는 기관으로써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,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,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

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
2.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
3.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)**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성북구 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
2.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
3.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관계관
4.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
5. 청소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
6.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
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2.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
5. 제13조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6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7조(위원의 임기)** 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성북구 의회 의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, 자료제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**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를 포함한 필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공공시설 이용권)**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,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)**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·교육·자립·취업지원
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14조(지원센터의 위탁)**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5조(지원센터의 지도·점검)**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